

제주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나1317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제주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나1317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가단6979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제주특별자치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종철

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하영, 한정빈

변론 종결 2024. 8. 28.

판결 선고 2024. 10. 16.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가단6979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6.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20. 5. 6. 접수 제227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소유이던 부동산을 각 처분하였다.

1	서귀포시 C 대 1464m ²	2019. 4. 8.(2019. 6. 14.)	D, E각 1/2지분	450,000,000	
2	서귀포시 F 대 172m ² 등	2020. 1. 9.(2020. 1. 13.)	피고	212,000,000	총 8개 부동산1) 서귀포시 I, 위 J 토지 및 지상 건물, 위 K, 위 M 토지 및 건물, 위 F 토지 및 건물동시 처분
3	서귀포시 G 전 9649m ²	2020. 4. 23.(2020. 4. 23)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H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은 피고가 2020. 1. 9.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850,000,000	

나. 제주세무서장은 B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따라 위 각 거래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합계 907,324,383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① 2020. 7. 9. 위 표 순번2 거래에 관하여 지방소득세 2,901,590원, ② 2020. 9. 10. 위 표 순번 3 거래에 관하여 지방소득세

8,044,010원, ③ 2020. 10. 9. 위 표 순번1 거래에 관하여 지방소득세 10,807,330원 합계 21,752,930원의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B는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B는 2020. 5. 6. 작은 아버지인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20. 11. 18. B가 위 지방소득세 등을 체납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고, 2022. 10. 6.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제주지방법원 2022카단11326)에 기한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마. 2022. 11. 21. 기준 B의 체납액은 26,233,770원(= 본세 21,861,360원3) + 가산금 4,372,410원,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20. 11.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칠 무렵 실태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B의 유일한 재산이라는 사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2. 12. 5.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B의 체납으로 인하여 지방징수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B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B의 유일한 재산이라거나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이 원고의 채권 총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까지 파악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원고가 2020. 11. 18.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제주세무서는 그때까지 양도소득세 체납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제주세무서는 2020. 12. 30.경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원고는 2022. 10. 28.경에야 제주세무서가 부과한 양도소득세의 체납액을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비록 B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처분이 진행 중이기는 하였으나 B가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를 현금이나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④ 그에 따라 원고는 압류등기를 마친 이후에도 수신회에 걸쳐 납부 독촉을 하는 한편, 2020. 10. 6. 휴면예금 조회 요청을 하고 2021. 5. 28. N조합, O조합, P은행에 대한 B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일괄하여 압류를 설정하였으며, 더 나아가 2022. 7. 14. B의 직장을 조회하여 급여압류예고통지를 하는 등 B의 다른 재산에 대한 조사를 지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2022. 8. 18.경 B의 아버지 등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제공받고 비로소 피고가 B의 작은 아버지임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2022. 8. 22.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였던 점, ⑥ 당심에서 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B의 유일한 재산이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사후적인 결과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할 당시 유일한 재산인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로 보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친 2020. 11. 18. 무렵에 사해행위의 취소원인, 즉 B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이 B와 피고의 가족관계를 확인한 2022. 8. 18. 무렵에야 비로소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20. 5. 6. 당시에는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B가 2019. 4. 8., 2020. 1. 9., 2020. 4. 23. 각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거래로 인하여 B에게 지방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이루어지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B가 지방소득세(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하여 원고가 2020. 7. 9., 2020. 9. 10., 2020. 10. 9. 각 이 사건 조세채권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이 B의 유일한 재산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B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B의 작은 아버지로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가 그 소유의 부동산들을 대부업체 등에 담보로 제공하여 부모님이 거주 중이던 부동산에 경매가 개시될 우려가 있어 피고가 이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것인바, 피고 또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이 이 사건 매매예약 이전에 B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고(제1의 가항 표 순번 2, 3 참조), 위 회사의 사내이사인 Q가 2020. 10. 26. 제1의 가.항 표 순번 1 부동산을 취득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B가 채무 과다 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단기간 내에 처분한 사실, 그에 따라 추후 B에게 지방소득세 등이 부과될 것이라는 점 및 B가 담세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B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광섭

판사정가원

판사이승욱

별지

1) 서귀포시 I, 위 J 토지 및 지상 건물, 위 K, 위 M 토지 및 건물, 위 F 토지 및 건물

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은 피고가 2020. 1. 9.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95,230원도 체납하였다.